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코로나 19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음압병상 등 감염병관리시설을 충분히 신속하게 확충할 필요가 있어,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재난대응 목적의 가설건축물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기존 병원부지에 감염병관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의 120퍼센트까지 완화하여주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재난 대응 목적의 가설건축물 설치 허용(안 제61조제5호 신설)

현재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로써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나. 감염병관리시설 증축시 용적률 완화(안 제85조제3항제6호 신설)

감염병관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시행령 용적률 상한의 12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로써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제85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로서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증축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병관리시설의 용적률 완화에 대한 적용례) ① 도시·군계획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까지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른 감염병

관리시설에 대한 용적률은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②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조례는 도시·군계획조례 시행일 이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 서의 개발행위)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1. ~ 4. (생략) <u><신설></u>	제61조(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 서의 개발행위)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 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 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 급조치로써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u>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 률)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 할 수 있다. <u><신설></u>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 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6. 「 <u>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 제36조제3항에 따른 <u>감염병관리시설로서 질 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u>

④ ~ ⑫ (생 략)	<u>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 여 증축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 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 는 비율</u> ④ ~ ⑫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709